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6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2. 9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9.23.)

상정. 심사. 보류

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10.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팀장 김미정】

가. 제안이유

지역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동별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 ~ 제4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~ 제12조)

- 위원회 구성, 위원장 직무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 ~ 제9조)
-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 (안 제10조 ~ 제11조)
-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- 특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3조 ~ 제15조)
 -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13조 ~ 제14조)
 -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(안 제15조)
-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6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 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하는 것임.

O 주요내용으로는

- ▲ (안 제1조 ~ 제2조)에는 동별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정의, ▲ (안 제3조 ~ 제4조)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,
- ▲ (안 제5조 ~ 제9조)에는 위원회 구성, 위원장 직무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, ▲ (안 제10조 ~ 제11조)에는 위원회 제척·기 피·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, ▲ (안 제12조)에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, ▲ (안 제13조 ~ 제14조)에는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, ▲ (안 제15조)에는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, ▲ (안 제16조)에는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동 중심의 민원 해결 기구로 동장이 추천하는 등 일반 주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,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 제 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」에 따라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제5조 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들은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민원 중재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시 수용이 가능한 만큼 위원선정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.
- 기초 자치단체 내 동별 민원 해결기구 조례 제정 건은 없으며, 광역· 기초 자치단체 규모에서 운영하는 민원 해결기구는 있으나, 동 단위 의 소규모 기구는 자치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제안에서 해결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가 필요 할 것임.
- 또한, 마포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신설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마포구 의견 수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일방통행함에 따라 마포구 구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, 성미산 산림환경 개선사업이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점 제시로 사업이 진행되는 못 하고 있는 점, 재건축, 재개발, 모아주택정책에 따른 찬반 등 동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 등은 본 조례안 제정이 대안이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기존 유사한 기구 중 「찾아가는 동주민센터」,「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,「자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기구의 특성에 맞는 조례의 기능 제 설정과 조례의 통폐합, 불필요한 조례의 폐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유사사례 검토

- 기구 명: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(찿·동) 조례, 매뉴얼
 -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주민을 방문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함
- 기구 특성
 -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(2022년 서울시 전면 시행) → 골목길 반상 회로 발전
 - * '골목회의', '서울형 주민자치회': 주차공간, 쓰레기 문제, 가로등설치 등 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골목회의 개최 요청 → 해당 안건은 주민자치회에 의제로 올라가 논의 → 의제로 정식 채택되는 경우에는 예산 할당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- 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-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22-88 관련

발의년월일: 2022. 9. .

발 의 자:강동오

1. 수정이유

용어의 정의를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 수정과 위원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의 정족수와의결 정족수를 상향하여 변경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창의적인 의견"을 "의견"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,
- 나. 안 제5조제3항제2호 중 "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"을 "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6호) 중 "학식"을 "식견"으로 하고,
- 다. 안 제9조제4항 중 "과반수의 출석"을 "3분의 2 이상의 출석"으로, "과 반수의 찬성"을 "3분의 2 이상의 찬성"으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창의적인 의견"을 "의견"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 중 "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"을 "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 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 6호) 중 "학식"을 "식견"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"과반수의 출석"을 "3분의 2 이상의 출석"으로, "과반수의 찬성"을 "3분의 2 이상의 찬성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	제2조(정의)
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다수인 민원"이란 일상생활	1
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	
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	
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	
것을 말한다.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	<u><삭 제></u>
관한 사항	
<u>바</u> . (생 략)	<u>마</u> . (현행 바목과 같음)
사. 동별 민관상생위원회가 심	<u><삭 제></u>
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	
단되는 사항	
2. "주민제안"이란 서울특별시	2
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	
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	
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<u>창</u>	<u>의견</u>
<u>의적인 의견</u> 으로서 다음 각 목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	··
말한다.	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	<u><삭 제></u>
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	

한 사항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 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

다.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.·마. (생 략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무가 아닌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③ 위촉직 위 저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- 1. (생략)
- 2. 토목공학, 건축공학, 회계학, 법학 및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- 3.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· 5. (생략)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 현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<u><삭 제></u>
<삭 제>
<u>가</u> .· <u>나</u> . (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) < <u>삭 제></u>
세5조(위원회의 구성)
<u>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</u> <u>가진</u> < <u>삭 제></u>
<u>3</u> . · <u>4</u> 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<u>5</u> <u>식견</u>

는 사람

재적위원 <u>과반수의 출석</u>으로 개의 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<u>찬성</u>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④ 회의는 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④ ---------- <u>3분의 2 이상의 출석</u>---------- 3분의 2 이상의 <u>찬성</u>----.